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 9. 1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8월 30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9월 6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2. 9.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오승환)

가. 제안이유

- 「도서관법」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지원하여 관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서관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의사상자,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게는 문화강좌 수강료의 50%를, 다등이카드 소지 가족에게는 문화강좌 수강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
- 별표1의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서 도로명 주소 신설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 운영 되는 우리구 정보문화도서관의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한하여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의 50% 이내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게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의 50% 이내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17조제4항에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 가족에게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의 30% 이내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 그 밖에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각 개별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46 호
----------	---------

제출연월일 : 2012.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도서관법」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지원하여 관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서관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의사상자,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게는 문화강좌 수강료의 50%를, 다둥이카드 소지 가족에게는 문화강좌 수강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

나. 별표1의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서 도로명 주소 신설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서관법」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6.21~7.11,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검토필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관할구역 안”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사용하는 자”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용하려는 자”를 “사용하려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신청하는 자”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분야에 대하여”를 “분야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도서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도서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위반한”을 “위반하였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발생한”을 “발생하였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검사결과”을 “검사 결과”로 한다.

제 11조제4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

제 12조제6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 13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 16조제1항제1호 중 “저해한”을 “저해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반한”을 “위반하였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을”로 한다.

제 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자
5.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경로우대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제 18조 중 “자는 사용권을 제3자”를 “사람은 사용권을 제3자”로 한다.

제 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된 자”를 “등록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상당”을 “상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21조 중 “판단되는 자”를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1 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608-2)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88-1)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76-5,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u>서울특별시영등포구</u> (이하 “구”라 한다) <u>관할구역</u> 안에 두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2조(설치)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 <u>관할구역</u>-----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수수료”란 회원증 발급과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나 정보를 복사하거나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를 <u>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u></p> <p>5.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u>사용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u></p> <p>6.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교육·문화 교실 등의 강좌를 수강하려고 <u>신청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u></p> <p>7. (생략)</p>	<p>제3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사</u> ----- <u>용하는 사람</u>----- -----.</p> <p>5. ----- <u>사용</u> <u>하려는 사람</u>----- -----.</p> <p>6. ----- <u>신</u> <u>청하는 사람</u>----- -----.</p> <p>7.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생략)</p> <p>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p>	<p>제4조(기능)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분야의</u> ----- -----</p>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u>검사결과</u>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u>검사 결과</u> ----- -----.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③(생략)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⑤·⑥ (생략)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위원회의 사무</u>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략) 6. <u>그 밖의</u>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 -----.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u> ----- -----.
제13조(회의 및 수당) ①·② (생략)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u>범위</u>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및 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범위</u> ----- -----.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u>저해한</u>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u>위반한</u>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u>아니</u>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 1. ----- <u>저해할</u> ----- 2. ----- <u>위반하였을</u> ----- 3. ----- <u>않</u>

현행	개정안
<p>의 <u>사용허가</u>를 받은 <u>자</u>는 <u>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u></p> <p>제19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자</u>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에 회원으로 <u>등록된 자</u>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u>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u> 3. 그 밖에 관장이 <u>인정하는 자</u> <p>②、③ (생략)</p> <p>제20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같은 자료로 변상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하면 시가에 <u>상당하는 금액</u>으로 변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u>아니하다.</u> <p>제21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u>자</u>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25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생략)</p>	<p>----- <u>사람은 사용권을 제3자</u>-----.</p> <p>제19조(대출) ① ----- ----- <u>해당하는 사람</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등록된 사람</u> 2. ----- - <u>해당</u> ----- 3. ----- <u>인정하는 사람</u>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변상책임) ① ----- ----- ----- - <u>상응</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아니한다.</u> <p>제21조(입장의 제한) ----- ----- <u>판단되는 사람</u>-----.</p> <p>제25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하다</u>.</p>	<p>② ----- ----- ----- ----- <u>아니한다</u>.</p>

현행	개정안																								
<p>[별표 1] 도서관의 명칭·위치(제2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명칭</th> <th style="width: 60%;">위치</th> <th style="width: 2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대립정보 문화도서관</td> <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608-2</td> <td></td> </tr> <tr> <td>선유정보 문화도서관</td> <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88-1</td> <td></td> </tr> <tr> <td>문래정보 문화도서관</td> <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76-5,8</td> <td></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비고	대립정보 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608-2		선유정보 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88-1		문래정보 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76-5,8		<p>[별표 1] 도서관의 명칭·위치(제2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명칭</th> <th style="width: 60%;">위치</th> <th style="width: 2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대립정보 문화도서관</td> <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608-2)</td> <td></td> </tr> <tr> <td>선유정보 문화도서관</td> <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88-1)</td> <td></td> </tr> <tr> <td>문래정보 문화도서관</td> <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76-5,8)</td> <td></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비고	대립정보 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608-2)		선유정보 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88-1)		문래정보 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76-5,8)	
명칭	위치	비고																							
대립정보 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608-2																								
선유정보 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88-1																								
문래정보 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76-5,8																								
명칭	위치	비고																							
대립정보 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립동 608-2)																								
선유정보 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88-1)																								
문래정보 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76-5,8)																								